

瑞山市稅條例改正條例案 檢 討 報 告

1. 提出者：瑞山市長

2. 提出日字：1998. 3. 31

3. 提案理由

-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한 조항 신설 및 준칙안에 의거 각 조항을 삭제. 수정하고,
- 세목별 과세표준. 세율등 조례에 반영 되어야 할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 정비하고자 함.

4. 主要骨子

〈 신설되는 조항 〉

-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고시하고 세무조사시 납세자 권리현장 교부(안 제6조).
- 지방세를 신고 납부후 공사비의 정산등으로 가액변동시 수정 신고 납부하고, 수정신고로 인한 추가 세액이나 초과액 발생시 가산세와 환부이자는 미적용(안 제7조).

- 과세전 적부심사를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장 1인과 6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(안 제8조).

< 삭제되는 조항 >

- 사실상 불필요한 현행 제10조의 부과사실 증명서의 제출 조항은 삭제
- 농지세 감면 신청 조항중 현행 제29조 천재지변등으로 인한 감면신청과 제30조 종군자 등의 감면 신청은 현행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과 중복 및 지방세법에서 삭제 됨에 따라 제외

< 수정되는 조항 >

- 각종 세목별 조항을 개정된 지방세법령에 의거 현실에 맞도록 수정. 정비

< 기 타 사 항 >

- 지방세법 개정으로 용어가 바뀐 부분과 수정되는 조항에 따라 전체적으로 체계를 정비 개정 하고자 함.

5. 檢討意見

- ◎ 본 개정조례(안)은 지방세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, 과세객체, 과세표준, 세율, 기타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제정 운영되고 있는 서산시세 조례로써

< 개정조례(안) 총칙중 >

- 개정조례(안) 제6조 납세자 권리현장의 제정과 교부, 제7조 수정신고, 제8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조항을 신설하고, 현행 조례 제10조 부과사실 증명서 제출 조항은 삭제

< 개정조례(안) 보통세중 >

- 주민세(안) — 제18조 납세의무자, 제19조에 과세기준일과 납기, 제21조 신고납부, 제22조 수정신고납부의 조항을 신설
- 재산세(안) — 제23조 과세대상, 제24조 납세의무자, 제27조 세율 조항신설
- 자동차세(안) — 제36조 납세의무자, 제38조 납기와 징수방법, 제39조 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, 제40조 일할계산시 세액 계산 방법의 조항 신설
- 농지세(안) — 제41조 납세의무자, 제44조 과세기간, 제45조 과세표준, 제46조 세율, 제50조 확정신고와 자진납부의 조항이 신설되고, 현행조례 제29조 천재등으로 인한 감면신청, 제30조 종군자 등의 감면신청, 제31조 감면결정통지 조항삭제
- 담배소비세(안) — 제52조 과세대상, 제53조 납세의무자, 제54조 과세표준, 제55조 세율, 제57조 제조담배 반출신고, 제58조 개업·폐업 등의 신고, 제60조 신고납부등, 제61조 가산세, 제62조 납세담보 조항을 신설
- 도축세(안) — 제63조 납세의무자 조항신설

- 종합토지세(안) — 제71조 과세대상, 제72조 납세의무자, 제73조 과세표준, 제74조 세율, 제75조 과세기준일 및 납기, 제77조 부과징수등, 제78조 세액조정, 제79조 신고의무, 제80조 이의 신청, 제81조 매각. 등기. 등록 관계서류의 열람등, 제82조 과세대장비치 조항 신설

< 개정조례(안) 목적세종 >

- 도시계획세(안) — 제89조 과세표준, 제90조 과세표준과 납기 조항 신설
 - 사업소세(안) — 제95조 납세의무자, 제98조 납기 조항신설
- ◎ 개정된 지방세법에 맞추어 조항신설, 변경, 삭제, 수정, 보완 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.